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무규정 신설〉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74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5. 7.
3. 회 부 일 : 2026. 5.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시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조의3(기부의 날·기부주간 및 포상 등) (생략)</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3조의3(모집자의 책무)</u> 모집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모집하지 아니할 것 2. 특정 국가나 지역, 인종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u>제3조의4(기부의 날·기부주간 및 포상 등) (현행 제3조의3과 같음)</u>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기부금품의 모집자에 대하여는 ‘책무’ 규정을 두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 사용 · 공개 등 각 단계별로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의 과정에서 기부 대상자의 사정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 기부자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후원 광고나 홍보 내용에 어려움에 처한 특정 집단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편견을 확대하고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모집자의 책무**로서 모집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여 모집 정보의 정확성 ·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부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특정 국가 · 지역 · 인종 등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

1)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금품 출원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현장모집에 관한 사실을 포함한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공개 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 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이수진 기자, 「“이제는 멈춰야 할 빈곤 마케팅”...반크, 인권 위한 캠페인 돌입」, 2025.06.10. 연합뉴스, <https://sports.donga.com/society/article/all/20250610/131776735/1>, 2026.07.11. 최종확인.

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의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모집자의 책무’로서 본문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지
킬 것을 노력하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나 각 호는 모집자가 하
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책무규정**은 책무의 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
항을 **선언적·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실체적·구체적인 내용
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³⁾을 고려하여 자구와 조문의
위치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현행법상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로서 실제 각
종 기부금품의 모집·광고행위는 ‘**모집종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을 고려할 때 ‘모집종사자’⁴⁾에 대하여도 관련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기부’의 범위는 사회적 약자 외에도 교육·문화·예술·과학 등 진
흥이나 소비자 보호, 보건·복지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⁵⁾ 광범위

3)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05., pp.255~pp.257.

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권 보호의 대상을 ‘모든 사람’ 등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집자의 책무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나, 개정안의 본문은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각 호는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350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 3) 환경보전
-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 5) 보건·복지 증진
-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